

남원시 고시 제2017 - 24호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신정지구) 변경·결정 고시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결정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 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정지구	남원시 신정동 911번지 일원	22,505.2	-	22,505.2	남원시 고시 제2012-25호 (2014.04.27.)	

2) 지구단위계획에 변경·결정 조서

가) 세분된 용도지역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2,505.2	100.0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29.0	8.1	-
	일반상업지역	18,582.2	83.5	-
	자연녹지지역	1,994.0	8.4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

구분	가 구			획 지						비 고
	번호	면 적(㎡)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상업1	25,498.0	-	1	1	신정동 898 대	신정동 898 대	603.8	603.8	
				2	2	신정동 899 대	신정동 899 대	603.9	603.9	
				3	3	신정동 900 대	신정동 900 대	603.9	603.9	
				4	4	신정동 901 대	신정동 901 대	644.0	644.0	
변경	상업2	2,229.9	-	1	1	신정동 909대	신정동 909 대	423.8	423.8	911,912번 지 합병
				2	2	신정동 910 대	신정동 910 대	403.6	403.6	
				3	3	신정동 911대	신정동 911대	438.8	827.4	
				4		신정동 912대		388.6		
				5	4	신정동 913대	신정동 913대	575.1	575.1	
기정	상업3	2,560.8	-	1	1	신정동 903대	신정동 903대	480.0	480.0	
				2	2	신정동 904대	신정동 904대	814.9	814.9	
				3	3	신정동 905대	신정동 905대	430.0	430.0	
				4	4	신정동 906대	신정동 906대	395.9	395.9	
				5	5	신정동 907대	신정동 907대	440.0	440.0	
기정	상업4	1,445.3	-	1	1	신정동 914대	신정동 914대	600.1	600.1	
				2	2	신정동 915대	신정동 915대	410.1	410.1	
				3	3	신정동 916대	신정동 916대	435.1	435.1	
기정	상업5	559.2	-	1	1	신정동 917대	신정동 917대	559.2	559.2	
기정	상업6	703.9	-	1	1	신정동 919대	신정동 919대	380.1	380.1	
				2	2	신정동 920대	신정동 920대	323.8	323.8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2.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관련도면 : 실음생략

남원시 고시 제2017 - 25호

재해위험저수지(칭계제·방평제)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남 원 시 장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내용

저수지명	위 치	제 원				해 제 사 유	비 고
		총저수량 (천㎡)	제방 길이(m)	제방 높이(m)	수해 면적(ha)		
칭계제 저수지	남원시 아영면 칭계리 427번지	342.8	98	19	6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보강·정비 완료후 안전점검 (A등급)
방평제 저수지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산69-13번지	7.8	77	9.4	8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농정과 농업시설 063-620-6387)

남원시 청계제 · 방평제 저수지 위치도

○ 청계제 저수지 위치도



○ 방평제 저수지 위치도



남원시 고시 제2017 - 28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10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토지의 소유자 (사업 시행자)		토 지 의 표 시						개간대상 면 적 (m ²)
성 명	주 소	시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m ²)	
이**	경기도 시흥시 ***** ***** **-*	남원	운봉	화수	산30	임야	9,930	4,990

- 5. 사업기간 : 2017. 03. ~ 2018. 02. 28.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업시설(620-6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 - 383호

정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0.

남 원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명칭 : 정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원시장
-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남원시청)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110,000㎡
- 사업규모 : 배수시설 정비 L=1,146m, 사면정리 2개소(옹벽 71m)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7년 3월
- 준공예정일 : 2018년 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 참조

6. 실시설계도서 :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비치 및 열람 가능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명세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시	면·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남원	주생면 정송리	산8-13	임	1,190	29	박정○ 외 1인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				
2	남원	주생면 정송리	산8-11	임	4,165	227	이규○ 외 1인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				
3	남원	주생면 정송리	136	답	2,747	6	최인○	남원시 주생면 정송1길 **				
4	남원	주생면 정송리	137-1	답	588	245	김재○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				
5	남원	주생면 정송리	144-1	답	1,207	217	최두○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				
6	남원	주생면 정송리	182	답	1,728	18	유중○	남원시 동충동 현대아파트***				
7	남원	주생면 정송리	182-1	도	23	16	강성○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지장물조서

연번	소재지			종류	구조	수량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시	면·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남원	주생면 정송리	산8-13	창고	콘크리트 합석	76	박정○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				

남원시 공고 제2017-386호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나. 지원 대상 및 선정 (안 제3조, 안 제4조)
- 다. 지원 등 (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재정과
 -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0)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1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부터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시장은 제3조의 지원 대상자를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지급
2.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남원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등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7 - 397호

남원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시설)결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안을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3월 10일

1. 남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문화시설	쌍교동 260번지 일원	-	증)1,762	1,762	금회	

2. 입안사유 : 광한루원 주변의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구도심권의 관광자원 집적화를 통해 남원시의 중심지 회복 및 합리적인 토지활용을 도모하고자 기 시설 폐지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남원 도시계획 시설(문화시설)을 결정하고자 함

3. 공람기간 : 신문공고 익일 후 14일이상

4.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남원시 도시과(063-620-6452) 및 관광과(063-620-6179)

5. 관련도서 : 실음생략(관련도서는 남원시 도시과, 관광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7 - 399호

남원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 실상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전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 실상사 역사공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남 원 시 장

2017년 3월 10일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역사공원) 사업
2.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명	위치	시설명	도면표시번호	사업면적(m ²)	사업시행자	비고
남원 실상사 역사공원 정비사업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33-1번지 일원	역사공원 (실상사 역사공원)	2	1,058 (전체 63,475)	대한불교 조계종 실상사	

3. 사업의 착수에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7. 12. 31.
4.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실음생략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6. 열람기간 : 열람개재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6)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1,096	1,058						
1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47		답	1,578	640	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	50	-	-	-	
2		47	1	답	563	48	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	50	-	-	-	
3		46		답	1,321	264	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	50	-	-	-	
4		43	18	답	823	36	대한불교 조계종실상사	50	-	-	-	
5		781	4	구거	6,811	70	농림축산 식품부					

○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남원시공고 제2017-402호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0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및 기관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의 정비 등을 통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재정비(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 경사도 완화,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세부 허가사항 규정

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개선 (안 제43조제1항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다.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조항 신설 (안 제62조제4항)

라. 전자심의 제도 도입에 따른 심의 사항 개정 및 전자심의 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69조제4항, 안 제75조제2항)

- 전자심의 개최 범위 및 수당 지급

마.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 문구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안 제69조제5항)

바. 2분과 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심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70조제1항제2호)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 (단, 도시지역 내 15도 이상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설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제2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
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을 “격리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
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댓값

제69조제4항 중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을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는 서면(전자심의)로 심의·자문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최초심의를 포함

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70조 제1항제2호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의 지정·변경으로서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이내 구역의 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심의”로 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심의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 56조의 별표 1의2제1호가목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 포함한다)</u></p> <p>가.·나. (생 략)</p> <p>3.·4. (생 략)</p> <p>② (생 략)</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u>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평균경사도는 21도 이하의 토지로 한다. (단, 도시지역 내 15도 이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u></p> <p>가.·나. (현행과 같음)</p> <p>3.·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 ----- ----- ----- ----- <u>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현지지형을 고려하여 절·설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사의 외부 반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태양광 관련 사업지 토사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u></p>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1. ~ 4. (생략)

<신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생략)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 3. ~ 13. (생략)

- ②·③ (생략)

<신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

- 1. ~ 4. (현행과 같음)

5. 1만세제공미터 이상의 토석채취의 경우 반출로가 150미터 이상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 안전을 위하여 교행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격리병원

- 3. ~ 13.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1.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제69조(회의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⑦ (생략)

제7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생략)

② ~ ⑤ (생략)

제75조(수당 및 여비) (생략)

<신설>

다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

제69조(회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심의)로 심의·자문할 수 ---.

⑤ -----
- 2회-----.

⑥·⑦ (현행과 같음)

제70조(분과위원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및 구역의 지정·변경으로서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이내 구역의 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심의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수당 및 여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전자심으로 심의·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17 - 407

공 시 송 달 공 고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0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3. 10 ~ 2017. 3. 24.
3. 납부기한 : 2017. 3. 31
4. 공시송달내용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7년 2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김*수	75****-*****	140002-2017-02-2-***-26	393,710	수취인미거주	2017. 3. 31